

교육주체,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 일시: 11월 16일(화) 오후 6시
- 장소: 전교조 전북지부 3층 강당
- 주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 주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교육주체,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 일시: 11월 16일(화) 오후 6시
- 장소: 전교조 전북지부 3층 강당
- 주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 주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교육주체,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 사회 : 임재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가자 소개

■토론문 발제(18:00~19:00)

1) 학생인권조례 왜 필요한가?

이예반(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

2)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

양혜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3)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 공유 및 제언

전누리(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4)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제안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김정훈(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전체토론(19:10~)

교육주체,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학생인권조례 왜 필요한가?

이예반(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아침은 상쾌합니다. 하지만 학교 가는 아침은 불쾌하기만 합니다. 교복은 다 갖춰 입었는지, 교복 속에 입은 티셔츠 색깔은 무슨 색인지, 양말은 학교에서 요구한 색깔인지, 심지어 속옷, 가방, 스타킹은 학교에서 요구한 색깔인지, (명찰을 탈부착 하는 학교의 경우) 명찰은 달았는지, 머리카락은 너무 길지 않은지, 오늘은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해서 맞을지.. 등등을 고민하다 보면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학생도 인권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명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맞아야 하며, 두발이나 복장 또한 어른들의 취향대로 자르거나 입어야 하고 이름 또한 아무한테나 공개해야 합니다. 또, 엄연한 교육주체 입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일에 관여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줄지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밤늦게까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며, 해당 종교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종교수업을 듣거나 종교의식을 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받는 등 많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 C중학교에서 선생이 어떤 학생 머리를 의자로 내려치는 바람에 머리에 피가 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왜 병원을 갔다 왔냐며 또 때리는, 정말 비상식적인 체벌(?)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이미 전국에 걸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폭력으로 부터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쌍수 들고 환영할만한 존재입니다. 학교 가는 아침도 상쾌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이 사람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록,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폭행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는 신속히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어른들이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시 사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맞아서 학생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선수가 체벌로 사망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는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체벌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섭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도 아무런 힘을 갖지는 못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백 대 때리면 안 되지만 한 대 때리면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매 한 대와 백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맞아야 한다는 의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학생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의 의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발의의 조례가 되던, 시민발의 조례가 되던, 학생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을 위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참여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생 대부분이 체벌이나 과도한 강제학습, 도를 지나친 두발복장 규제 등에 대해 한번쯤 불평을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되고, 어떤 학생들은 불평할 여유조차 없이 공부에 매달리니 불평을 '인권'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 기회가 없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무엇이 인권침해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 당연히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말로만 '학생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만들어야 한다'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 아닌가요?

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제정되려면 학생에게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거나 최소한 시민단체들과 교육청이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고민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게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 수업을 하도록 시킨다거나, 학생인권조례 소식지나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여 각 학교마다 배포한 다던가,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들의 인권강연 및 토론회 등을 후원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 없이(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할 경우 당장 제정된다 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결국 과거의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1> 주요 학생인권실태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2009.11.0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 입시, 과잉 학습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15.4% (101)	53.5% (351)	19.0% (125)	21.2% (139)
방과후학교	점심시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학 보충수업, 자율학습	무응답
85.1% (558)	8.4% (55)	41.9% (275)	4.9% (32)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	오후저녁보충수업
85.9%(1173)	57.5%(785)	20.9%(285)	72.1%(98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56.9%(777)	13.5%(184)	80.6%(1101)	0.6%(8)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참여하거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반강제하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4.4% (29)	24.4% (160)	10.2% (67)	10.8% (71)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35.2% (231)	2.9% (19)	14.9% (98)	19.2% (126)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참여하거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반강제하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60.0%(819)	35.6%(486)	15.4%(210)	54.7%(747)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28.5%(389)	7.3%(100)	53.1%(726)	6.5%(89)

등하교시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평균 수면시간, 학원이 끝나는 시간 등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8시08분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7시45분
오전 8시 이전 등교	38.1%(250)	오전 8시 이전 등교	86.9%(1181)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4시15분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8시21분

오후 4시 이후 하교	60.8%(399)	오후 9시 이후 하교	64.7%(884)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8시간4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12시간35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9시31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11시20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14.2시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8.3시간
평균수면시간	6.7시간	평균수면시간	5.6시간
6시간 이하 수면	40.7%(267)	6시간 이하 수면	75.3%(1028)

2. 거의 보장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에 대한 응답 (중학교)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응답
7.8% (51)	30.2% (198)	23.9% (157)	32.6% (214)	5.5% (36)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응답
6.2%(85)	24.9%(340)	28.3%(387)	36.9%(504)	3.7%(50)

3.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두발복장규제

두발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기타	무응답
95.3% (625)	2.9% (19)	0.8% (5)	0.3% (2)	0.8% (5)

두발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기타	무응답
94.2%(1287)	4.2%(58)	1.0%(13)	0.2%(3)	0.4%(5)

복장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양말,스타킹,신발 등 색깔,형태를 규제한다.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77.0% (505)	70.7% (464)	38.7% (254)	78.4% (514)	
귀걸이,핀 등 악세사리를 규제한다.	명찰이나 뱃지 착용을 강제한다.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기타	무응답
85.1% (558)	64.6% (424)	1.4% (9)	1.8% (12)	0.3% (2)

복장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교복 안쪽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양말,스타킹,신발 등 색깔,형태를 규제한다.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77.5%(1058)	74.4%(1011)	33.7%(461)	67.9%(928)	
귀걸이,핀 등 액세서리를 규제한다.	명찰이나 뱃지 착용을 강제한다.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기타	무응답
79.1%(1080)	65.6%(896)	1.5%(21)	2.8%(38)	0.5%(7)

4. 없어지지 않는 체벌, 숨 막히는 상벌점제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 없음	무응답
52.1%(342)	15.5%(102)	8.7%(57)	14.9%(98)	5.8%(38)	2.9%(19)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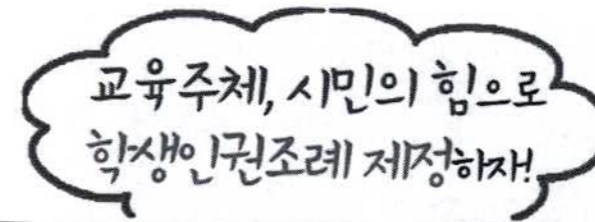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없음	무응답
49.9%(681)	14.0%(191)	9.5%(130)	19.9%(272)	5.1%(70)	1.5%(20)

체벌을 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과제수업태도	성적
56.4%(370)	44.1%(289)	62.3%(409)	18.9%(124)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저항	기타(학생간 폭력 등)	무응답
28.7%(188)	25.0%(164)	7.2%(47)	12.5%(82)

체벌을 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과제수업태도	성적
55.4%(757)	52.3%(714)	54.8%(749)	13.3%(181)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 저항	기타(학생간 폭력 등)	무응답
34.6%(472)	22.6%(309)	7.5%(102)	7.5%(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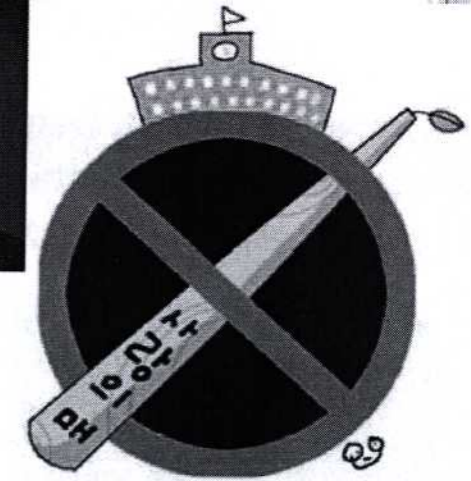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쟁점

양혜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 화노현 서울시교육감 (백경호 기자/자유사정)



서울시교육청, 체벌 전면 금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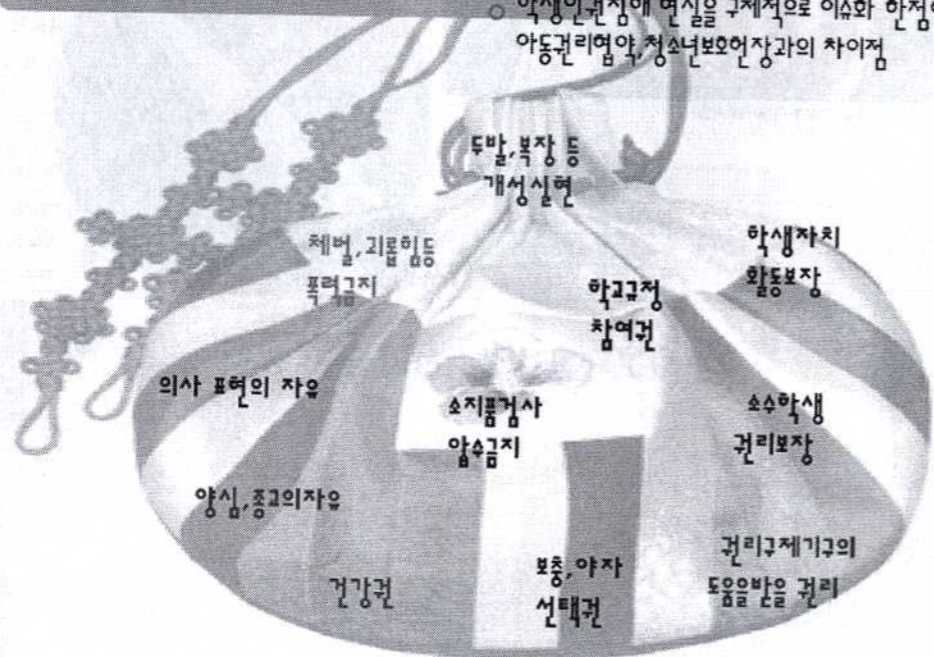


경기도,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선포(2010.10.5)

☞ 지금 학교에 인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

- 구체적 권리내용 다듬
- 학생인권침해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슈화 한점에서 아동권리협약 청소년보호헌장과의 차이점



학생인권 조례의 인권 기준

-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대한민국 정부 1991년 비준)
- 대한민국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 헌법 31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조중등교육법 18조 4항(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부끄러운 한국교육

: 1996년, 2003년 두 차례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한 주요 내용

-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 교사, 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학생인권 조례의 인권기준

○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경영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낡은 일이 아님(뉴욕시 징계및 중재기준-교육과정과 학생의 권리, 책임규정)

뉴욕시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인권의 권리 ▲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차별, 괴롭힘, 편견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표현의 자유(학생회 또는 각종모임을 구성, 참여할 권리, 학교생활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외연회를 대표할 권리, 정치적인권을 포함하여 견간지를 배포하거나 배지, 안장 등을 착용할 권리,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위험하거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몸 수색등 부당한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징계조치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상인 또는 대리인과 동반 출석할 권리 등)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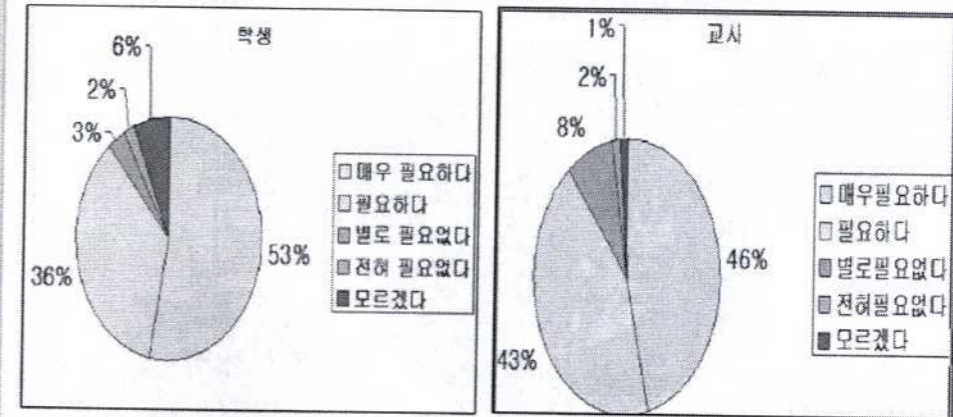
➢ 대한민국은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조례제정이 별도로 요구되는 현실.

학생의 책임

- 수업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 학교기기를 조심히 다룬다
- 건물 출입 규정을 따른다
-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분쟁을 해결할 때 극단적 방법을 피한다
-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게 행동한다
-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학생회를 긍정적 토론의 장으로 만든다
-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온다
- 학교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 권리를 가진 자만이 책임도 질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요구다



○ 2010년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인식조사」 학생인권조례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본대상과 크기- 교사 15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

학생인권 바람,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아이들이 밝아졌다.”



“교권 붕괴 시작됐다.”

학생인권조례 반대론

미성숙한 보호주의

체벌도 안돼. 뭣도 안돼.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미성숙한 애들 애개 자율이라니...

어린애들한테 사상 교육이라니...

당대자와를 어영하다니...

학생인권조례는 방임이다.

교육에서 '돌봄' 과 '자유' 가 모두 중요한 이유

2.6 의 자기결정권2

내일이 행복한 날엔

교 그와 창작현실

이제 바쁜 집, 저녁식사에 초대되었다

친구들 몰래... 혼자서 왔다. 이 집에는 뭐 할 만 다들 공부만 하니까...

친구들은 한 번의 아이돌로 성공하는 꿈을 내다와 애를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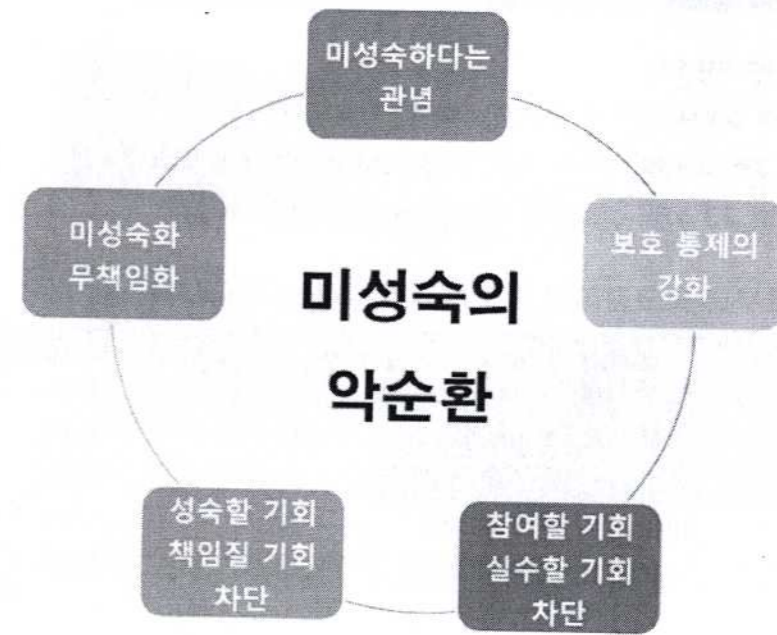
참여할 기회를 부모들에게는 적당히 잘 안하더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바쁘게 사살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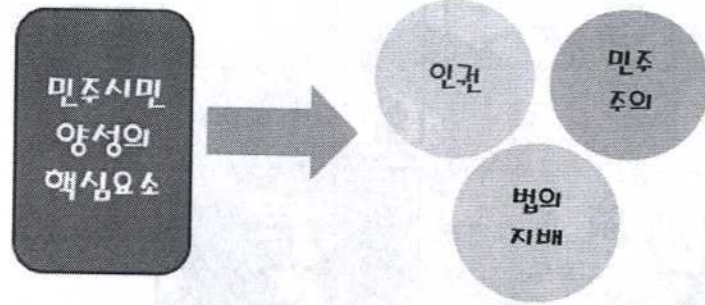
이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야. 공부만 하면 다들 공부한다

학생을 보호 대상으로만 묶어둘 때 더더욱 미성숙해질 수밖에 없다

미성숙하다 vs. 미성숙해지다



우리교육의 목표- 민주시민양성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서 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 받을수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가?

- 교사의 권력란 무엇인가?
- 권력: 권력의 주제, 내용, 권력 보장을 요구할 의무대상자 세 요소로 구성
(인간으로서의 권력, 교사신분을 보장한 노동권, 수업권)-한국사회에서 잘 보장되지 않고 있음
한국사회에서의 교권 논의는 학생지도권, 또는 학생 통제권으로 집중되어 있음

❖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편	전혀그렇지 않다
교육과목 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교사)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	교사의 개별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 일정
3.0%	60.9%	69.4%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입시 경쟁 교육의 해소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창구 개설
5.3%	38.2%	4.4%

- 2010년 10월 18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의 내용도 변하고 있음.
부견의 모조등학교 교장의 교사체벌사건(성적), 평택의 모사립학교 교장의 교사체벌(복장미단속) 학생지도권이 교권이냐 의무이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권리를 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일은 없기 때문...

체벌금지

두발자유

왜 중요한가?

체벌, 방법만의 문제일까?

다음 중 폭력이 아닌 것은?

- (1) 아동학대
- (2) 성희롱
- (3) 가정폭력(아내 구타)
- (4) 동성애자 구타
- (5) 장애인 차별
- (6) 학교폭력
- (7) 체벌

19C 노예 훈련법 5단계

엄격한 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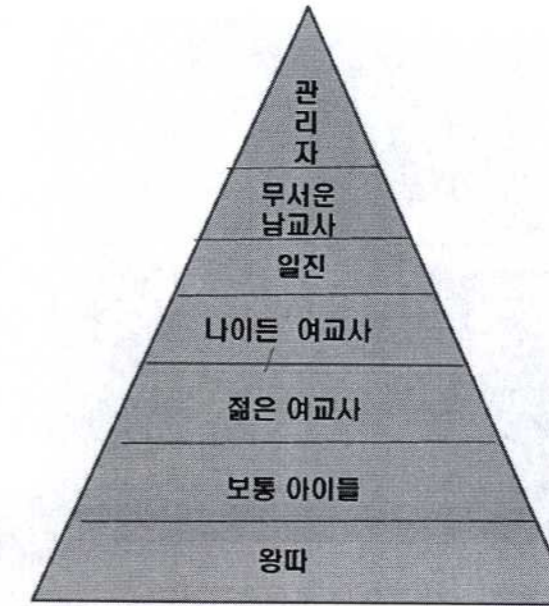
열등성에 대한 자각

주인이 가진 우월한 권력에 대한 믿음

주인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자신의 무력함과 의존성을 뱃속 깊이 느끼기

노예의 교육을 유지해 오지는 않았나?



학교 안 힘의 피라미드

체벌은 학교의 폭력적 구조를 반영하고 재생산한다.

용의복장단속, 무엇을 단속하고 있는가?





2010년,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에 이어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체벌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 개인의 인격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서 부딪히는 쟁점들 요약

반교권론

주요논리_ 학생은 배우는 지위, 훈육이 필요,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위축시킨다.

- 학생의 지위에 대한 고민 필요. 배움은 일방적 지식전달의 과정이 아니라 학생-교사 서로의 관계속에서 깨닫는 과정
-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교권을 학생적도권으로만 좁혀서 해석한 결과이다.

학습분위기 저해론

주요논리_ "핸드폰이 울리면 학습분위기가 침해된다" 는 생각은 교실에서는 교사의 목소리만 울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생각 아닌가?

정치화/홍위병론

(기본적으로 미성숙론, 보호주의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
: 청소년인권운동단체인 아수나로를 향해 조선일보가 좌빨 교육감의 홍위병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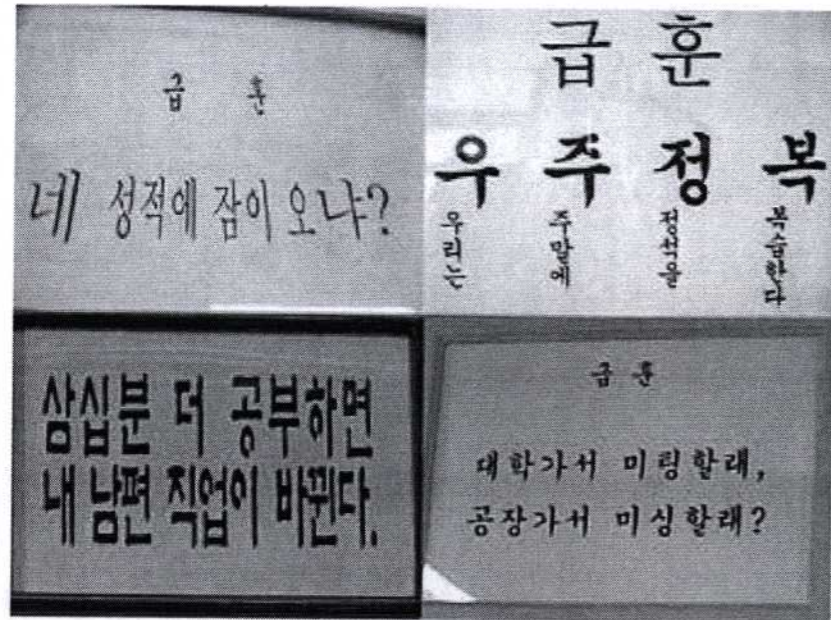
- 청소년 당사자인 우리에게 보육적인 주장.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할수 있는 것. 베네수엘라 차베스대통령 집권에 대해 "우리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선택했고, 우리가 그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 어린이, 청소년은 왜 정치하면 안되는가?

상위법 위반론

: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초과한 내용들을 담은 것 아니냐? 라는 논란
상위법 위배는 조례가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인권보장보다 좁게 담아낼때 쓰는 말이다.



두 집단의 차이는?



우리 교육의 프레임은?



20세기 중반 프랑스 학교의 풍경

지금 프랑스 교육은 엉망이 되었나?



핀란.

오후 2-3시 수업이 끝난 이후

☞ 국제학력조사 PISA 전 영역에서 고득점을 올린 핀란드. <경쟁이 아닌 협력!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 낙오자 없는 교육! > 지향

☞ "한국의 학생들은 성적은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자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

교육주체,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공유 및 상황

전누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1.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상황

○ 서울지역의 청소년, 교육, 노동,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를 구성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서울본부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조례안 작성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쳐 왔음.(구체적 흐름은 아래 경과과정을 참고)

○ 현재 서울본부는 주민발의에 필요한 81,550명(서울시민의 1%)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기 위해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학생인권조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을 공약으로 걸었던 박노현 후보가 당선된 서울시교육청은 체벌금지 TFT를 구성하고, 올해 2학기부터 체벌전면금지조치를 단행함. 최근 11월 9일에는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단'(위원장 건국대 한상희 교수)을 구성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추진 경과과정>

- 2010. 04.23(금) : 청소년인권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교육 인권 단체 공동 워크숍 진행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의 필요성을 공유함
 - 후속 모임을 진행하기로 함
- 2010. 04.27(화) : 후속모임 진행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결정

- 2010. 05.06(목)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구성 결의, 1차회의 진행
 - 지역순회토론회, 전국실태조사, 조례제정 서명운동, 학술대회 등을통해 사업 추진해나가기로 결정
 - 준비모임이 제안하여 교육감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중심 내용으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기로 함.

- 2010. 05.10(월) : 6.2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 초청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충북, 광주, 전남, 전북 후보 12명 협약 체결

- 2010. 06.08(화)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준비모임 3차회의
 - 준비모임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 서울지역을 필두로 지역 준비모임을 결성하기로 함
 - 서울운동본부 구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발족식 토론회 일정 확정

- 2010. 07.07(수)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이하 서울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개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2010. 07.15(목) : 서울본부 1차회의 (준비모임 5차회의)
 - 조례제정운동 방식에 관한 확정, 주민발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 2010. 07.26(월) : 서울본부 2차회의 (준비모임 6차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마련을 위한 집중 워크숍
 - 서울본부 주요 조직체계를 확정, 공동집행위원장 선출하고 3개 팀과청소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
 - 워크숍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집중 분석하고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 검토

- 2010. 09.11(토) :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진행(전교조 서울지부)

- 2010. 09.16(목) : 서울본부 5차회의 (전국모임 9차회의)
 -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도에 대한 대응 결정 및 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함.

- 2010. 09.27(월) :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0. 10.6(수) : '학생인권 요기 있네' 학생인권 거리사진전 진행(광화문 4거리)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 구성 (125인 참여)
'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 시대를 열자' 서울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제안마당 진행(한국건강연대)
- 2010. 10.18(월)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건강연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 발표 공청회 진행' (한국건강연대)
- 2010. 10.27(수) :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 청구 및 주민발의운동 본격 실시
(2011년 4월 26일까지 서울시민의 1% 이상의 청구서명을 받아야 함.)

2.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의 의의

- 조례안을 직접 작성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주민발의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음.
- (연대) 19세 이상의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주민발의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19세 이상의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촉구 한다는 부분이 있음. 성인과 청소년의 관계가 '갈등'이 아닌 '연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주민발의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는 문제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선거권보장 논의와 함께 짚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공론화) 주민발의 운동은 학생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공론화를 기대할 수 있음. 지난 9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한 경기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청 중심의 추진 속에 중앙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지역이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음. 결국, 조례 통과 후에도 나타나고 있는 체벌사건 등 여타의 경기도 학교 현장의 상황들은 추진과정 속의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지역이나 혹은 학교 현장 등 '아래에서부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혹은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이 과정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통과 후 현장에서의 안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지지의 결집) 주민들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발의 운동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을 열망하는 다수 시민들의 의지와 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결집시킬 수 있음.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청구서명은 대부분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 아니 학생인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몇몇 언론과 보수적 교육단체들의 반대 주장을 깨트릴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지지와 견제) 교육청과 별개로 진행되는 학생인권조례의 주민발의운동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교육청에게 있어 그 자체로 큰 지지가 될 수 있을 것임. 한편으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큰 견제가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조례의 내용, 특히 민감한 쟁점조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 주민발의운동은 서울시교육청에 큰 지지와 견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참여) 최근 진보교육감의 당선 이후 일각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가버너스' 등 교육행정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논의의 수준과 실제적인 현실은 교육청 내 자문위원회, 사안별 TFT 구성과 상층 시민사회 인사의 참여정도로 그치고 있음. 이런 상황이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진정한 의미의 가버너스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오히려 시민들의 직접 내용을 만들고 이에 대해 시민들의 청구서명으로 진행되는 주민발의 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행정의 참여가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음. 진보교육감 당선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앞선 몇몇의 조례운동처럼 주민들의 교육행정 참여의 한 사례가 될 것임.

3. 앞으로의 전망

- 필요양식 등 주민발의 청구서명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서명운동이 쉽지 않으나 서울본부는 최선을 다해 주민발의운동을 진행하고 성공시킬 것임. 다만 다음과 같은 조례제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몇몇 우려되는 지점들이 존재함.
-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위한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요내용은 체벌금지, 정학 및 전학, 학부모소환권 등의 징계제도 공식화, 학교장 및 학칙에 따른 권리제한 등이 그것임. 이미 한 차례 시민사회단체와 몇몇 교육감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지만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 연내 시행령 개정을 못 박고 있는 상황임.
- (보수진영)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보수적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음. 그들이 조례제정과정에서 큰 방해물 하긴 어렵겠지만 조례 통과 이후 학교현장에서 조례의 안착화를 방해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러움.
- (시의회)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시의회의 다수당이기에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처럼 학생인권조례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나 혹은 교육청

이 제출한 안과의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할 지 고민해야 함.

○ (체벌) 체벌 전면금지 실시의 계기가 된 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의 당사자가 해임처분에 반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했음. 12월 초 즈음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됨. 징계처분이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흔들려는 보수진영의 입장에 힘이 실릴 것임. 또 한편으로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판까지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체벌에 대한 법원의 기존 입장(교육적 목적을 위한 제한적 체벌 허용)이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지 주목해야 함.

참고자료 1> 서울본부의 학생인권조례안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

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

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

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 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

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

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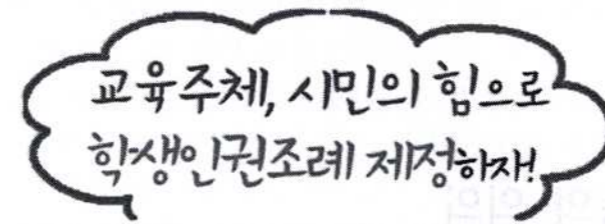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김정훈(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1. 왜 필요한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의 꾸준한 활동의 성과이자 촛불을 전후로 펼쳐진 해당 주체들의 자발적인 권리 쟁취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기성세대의 편견으로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거한 편견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조차 제한하고, 부지불식 중에 반인권적 억압을 도덕과 사회규범적 영역 속에 숨겨 놓고 자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조차 그들을 보살펴야 할 교육의 대상(훈육보다는 나은가?)으로 바라보면서 두발 및 체벌 등 사회적 이슈에 한정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청소년 학생들의 인권을 논의 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조차도 막연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와 사회가 청소년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며 학생 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발견한다. 학생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와의 다양한 접근과 소통의 가교 역할이 시민사회단체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닫힌 인식을 열어주는 역할도 있다. 무엇보다 진보적인 교육아젠다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와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

는 데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제안한다.

2.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의의

경기도에서 9월17일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등 점차 확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대해 교과부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권조례 무력화를 차단하고 교육3주체가 자발적 운동과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 활동 내용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의의와 추진방안
-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마련
- 도단위, 시군단위 토론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서명운동 전개
- 도의회 등과의 토론회 추진 등

4. 참가단체 및 운영(안)

-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학생청소년단체, 청소년지원단체, 인권단체
-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부터 제정 이후 일정기간 까지 한시적 운영

5. 주요 경로 및 사례

(가) 경기도의 경우-경기도교육청 주도, 자문위 활동 위주

- ① 2009. 05.28(목)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 ② 2009.07.30(목)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교육감) 및 제1차 협의회
 - 광주인권조례안과 일본 가와사키현 조례의 선행학습 계획 수립
- ③ 2009.08.04(화) : 자문위원회 제2차 협의회·인권 조례 관련 연수
 - 자문위원회의 위상 정립: 인권조례안을 성안하는 주도적 역할

- ④ 2009.08.20(목) : 자문위원회 제3차 협의회
 - 자문위원 4명 추가 위촉, 기획소위원회 구성
- ⑤ 2009.08.27(목) : 자문위원회 제4차 협의회
 - 조례안기초소위원회 구성 · 위탁연구과제 공모 제안서를 검토
 -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 ⑥ 2009. 08.26(수) : 2009 위탁 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 공모
 - 공모과제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 연구
- ⑦ 2009.09.10(목)~09.11(금) : 자문위원회 연찬회 및 제5차 협의회
 - 학생 인권의 국제적 흐름-류은숙(인권활동가)
 - 학생 인권의 현실-공현(청소년인권네트워크)
 - 일본지자체의 아동조례 제정 현황-김형욱(전 와세다대 연구원)
 - 경남인권조례 제정 현황-고영남(인제대 교수)
 - 학생 인권과 교원에 대한 쟁점 토론-배경내(인권활동가, 자문위원)

(나) 서울의 경우 -서울운동본부 구성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별첨2.학생인권조례안과 의견, 서울운동본부 구성과 활동내용>

(1) 서울운동본부의 위상과 역할

- 서울운동본부는 인권, 청소년, 학부모, 교사 단체 등 제 시민노동사회 단체가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포함, 학생인권신장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진지로서 서울에서의 선도적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 서울운동본부는 각종 조사, 선전홍보, 정책연구, 조직 활동, 학생인권시안 대응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종합적 운동을 전개한다.
- 서울운동본부는 서울 교육청의 학생인권신장 사업에 협조하는 한편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2) 서울운동본부의 구성

■ 참가 단체 조직

① 현재 참가 단체 : 31개 단체

공공노동조합비정규직분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나다, 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서울지부, 전공노서울지역본부, 전지협서울지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학생모임(준),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종교자유

② 참가 단체 추가 조직

- 서울운동본부의 전반적인 활동을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에서부터 서명 조직 정도를 할 수 있는 단체까지 참가 단체를 광범위하게 조직한다.
-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나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과 같은 기존의 연대 단체의 협조를 얻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의 참가를 조직해 낸다.
- 지역운동본부 구성을 위해 특히 지역 조직이 있는 단체들의 가입을 적극 조직하고 지역의 다양한 시민노동사회단체를 발굴 참가 조직한다.

■ 서울 운동 본부 구성

- ① 공동대표 : 참가 단체 및 지역 대표를 모두 공동 대표로 하고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운동본부의 주요 활동을 심의 결정하며 소속 단체 및 지역의 조례제정운동을 담보한다.
- ② 공동집행위원장 : 3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어 제반 활동을 기획하고 팀별 집행을 총괄토록 한다.
- ③ 집행팀 : 조례안작성, 선전홍보, 조직 등 3개의 집행팀을 둔다.

(3) 운동본부 운영

- ① 회의 체계
 - 대표자 회의 : 각단체 대표, 지역운동본부 대표/중요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때 개최
 - 집행위원회 회의 : 공동집행위원장과 팀별 집행위원 전체 회의/각종 활동 계획 수립, 집행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해 격주 등 정기적으로 개최
 - 팀별 회의 : 팀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 ② 재정 확보 방안
 - 단체별 조건에 따라 3만원, 5만원, 10만원씩 월별 분담금 부과
 - 사업비가 분담금으로 부족할 때는 단체별 조건에 따라 특별 분담금 부과
 - 일정한 액수를 매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후원회원 모집
 - 연말 등 적절한 시기에 후원의 날 개최하여 재정 모금 등

(4) 지역운동본부 구성

- ① 서울을 동부, 북부, 성북, 중서부, 강서, 남부, 관동, 강남, 강동 등 9개 지역으로 나눠 구성
- ② 지역의 기존 각종 연대 단위(예:동부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를 활용
- ③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참가 조직
- ④ 지역본부 구성 추진

참고 1>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한 바 있음. 지침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과 조약기구들이 제시한 바 있는 학생인권에 관한 기준, 유엔회의 결의문, 유니세프 '아동친화적 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검토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10가지 열쇠말을 뽑아냄. 이 10가지 열쇠말이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철학.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모욕과 폭력이 없는 학교 -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가실 이 아니다.
: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다.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7항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배제와 강요가 없는 학교 - 학생의 참여는 권리이다.
: 형식적 참여, 명목적 참여, 장식적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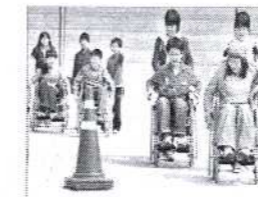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차별과 획일이 없는 학교?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차이를 존중받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양성은 교육의 조석이다 (...) 성장이란 민주화와 반차별이 존엄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집단적 학습 과정이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70-71항

4. 감당할 만한 교육

: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생은 학습할 능력을 타고났지만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를 기반하여 이뤄져야 한다."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학생은 인격과 자유를 존중 받을 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7항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 학습뿐 아니라 삶을 돌보는 학교?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 상황과 학교를 떠난 이후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념하는 것이다.



"학교는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자 위탁센터로서 복무해야 한다. 특히 학대, 방한 피해 및 착취로 고통받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청소년에게 그렇다"

-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26항

참고 2>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선언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공세는 학생인권을 더욱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자율화조치라는 미명하게 부활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인권적인 조치들은 일제고사, 교원평가와 같은 평가와 점수를 통한 서열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사고 등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이자 입시몰입학교의 확대는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서열화하고 입시경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인권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발규제는 불가피하다”거나 심지어는 “학생인권에 대한 강조는 교권을 침해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절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간의 소통이 요구됩니다.

더욱 중요하게 조례제정은 형식적인 서명이나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혜적인 것으로 왜곡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의 제 주체들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의 개선이 단지 학생인권조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학생인권의 문제가 입시경쟁체제를 비롯한 제반의 교육시장화와 그리고 학생에게 억압적인 사회문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교육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자기 요구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나아가 조례 추진에 반대하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전북의 교육주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포함한 토론회, 학생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학생인권은 교육입니다. 학생인권이 교육의 전 과정에서 온전하게 존중, 보호, 실현되는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하나,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시민 사회에 학생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하나, 학생 인권 조례를 청소년·인권·학부모·교사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하나,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교사의 인권 또한 신장되어야 함도 알려나갈 것입니다.

2010년 7월 9일

전북교육주체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학생 대표 청소년 이수나로 전북모임
학부모대표 평등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준)
교사대표 전교조 전북지부 수석부지부장

□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학교

- ☞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 ☞ 참된 배움이 있는 학교!
- ☞ 인격체로 존중받는 학교!
- ☞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
- ☞ 진정한 배려와 돌봄이 있는 학교!